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**안 번 호** 제2023-004-019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연 월 일 2023. 3. 8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("이하 "보호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| 피심인명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대표자 성명 | 주소 | 종업원 수<br>(명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        |

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 정보 관리실태 현장조사("22.11.18. 11.21.~11.22.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.

# 2. 행위 사실

# 가.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피심인은 민원 처리를 위해 2022. 11. 18.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고 있다.

#### 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집·이용 항목  | 수집일            | 건수(명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민원접수 및 관리리스트<br>(대표 홈페이지) | ( <del>필수</del> ) 성명, 주소, 휴대폰 번호<br>(선택) 이메일 주소 | '19.05.15 ~ 계속 | 4,048  |
| 부가통행료심사 관리대장<br>(엑셀 파일)   | (필수) 차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9.05.15 ~ 계속 | 28,339 |

### 나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 1)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민원접수 및 관리 리스트'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. 1. 26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3. 2. 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 Ⅲ. 위법성 판단

# 1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# 가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개인정 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, 이하 '고시'라고한다.) 제5조제3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나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,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, 고시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 Ⅳ. 처분 및 결정

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### < 과태료 부과기준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>

|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| 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 |    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위반행위  |                  | 1회 위반           | 2회 위반 | 3회 이상<br>위반 |
| 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<br>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5조<br>제2항제6호 | 600             | 1,200 | 2,400       |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2021. 1. 27.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

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 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.

### 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| 기준              | 감경사유  | 감경비율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조사<br>협조.       | 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<br>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금액의<br>50% 이내 |
| _<br>자진<br>시정 등 | 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<br>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| 기준금액의<br>40% 이내 |

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 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| 과태료 처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위반조항                 | 처분 조항        | 기준<br>금액(A) | 가중액<br>(B)     | 감경액<br>(C) | 최종액(D)<br>D=(A+B+C) |
| 제29조(안전성확보 조치 의무 위반) | 법 제75조제2항제6호 | 600         | 1              | △300       | 300                 |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